

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[별표] <개정 2021. 7. 19.>

**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
및 횟수**(제3조 관련)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	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		
	매독검사	HIV검사	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
1. 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	1회/6개월	1회/6개월	1회/6개월
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에 따른 유흥접객원	1회/3개월	1회/6개월	1회/3개월
3.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	1회/3개월	1회/6개월	1회/3개월
4.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 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 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 업장에 종사하는 사람	1회/3개월	1회/6개월	1회/3개월